

2000년도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보증채무부담행위(안)

의안 번호	865
----------	-----

제출년월일 : 2000.3.

제 출 자 : 안 산 시 장

1. 제 안 이 유

- 도시 저소득 세입자들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 국민주택기금에서 저리로 전세자금 융자를 실시함에 따라 시에서는 대출자들에 대하여 채무보증을 하기 위함.

2. 주 요 내 용

- 융자지원 규모 : 총1,712,000천원
- 용 자 대 상 : 안산시 1년이상 거주하고 주거전용면적 60㎡이하로서 융자금을 포함한 전세보증금 2000만원이하의 세입자
- 융자금 한도액 : 세대당 1,000만원 이내
- 대 출 금 리 : 연 3%
- 상 환 조 건 : 2년 만기 일시 상환
*전세재계약시 1회에 한하여 2년간 연장가능

3. 용 자 방 법

- 융자업무 취급기관 : 한국주택은행 안산지점
- 융자계약의 체결
 - 계약 당사자 : 지원대상 세대주와 주택은행 안산지점
 - 보 증 인 : 재산세 납부실적이 있는 세대주 1인 또는 주택은행장이 발행한 주택 금융 신용보증서
 - 안 산 시 장 : 융자대상자의 총체적 채무이행에 대하여 보증

4. 관 련 법 령

- 2000년도 저소득 세입자 전세자금 융자지침 (건설 교통부) : 붙임
 - 건교부 주정 58520-97(2000.1.14)호, 경기도 주택 58530-275(2000.1.24)호
- 지방자치법 제115조
- 지방재정법 제10조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1조

2000년도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보증채무부담행위동의(안)

안산시는 2000년도 저소득세입자 전세자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증채무부담행위를 할 것을 지방자치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동의한다

- 1.보증채무부담행위자 : 안산시장
- 2.용 자 대 상 : 안산시 1년이상 거주하고 주거전용면적 60㎡이하로서
 용자금 포함하여 전세자금 2,000만원 이하의 세입자
- 3.용 자 기 관 : 한국주택은행 안산지점
- 4.용자지원규모 : 총 1,712,000 천원
- 5.용자금한도액 : 세대당 1,000만원이내
6. 대 출 금 리 : 년 3 %
7. 상 환 조 건 : 2년만기 일시상환
8. 근 거 : 별 첨

저소득세입자 보증금 용자지원 협약서

안산시장(이하"갑"이라 한다.)과 한국주택은행 (이하"을"이라 한다.)은 "갑"의 추천에 의하여 안산시 거주 저소득세입자의 주거안정을 위한 전세자금을 "을"이 용자함에 있어 필요한 다음사항을 협약 한다.

제 1 조 (계정설치 및 용자한도)

- ① 전세자금 용자지원을 위하여 "을"이 차입한 자금은 특별계정을 설치하여 운용한다.
- ② "갑"의 추천에 의하여 "을"이 용자할수 있는 한도는 건설교통부 또는 안산시로부터 배정된 금액이하로 한다.

제 2 조 (용자대상자 선정등)

용자대상자등 선정기준은 건설교통부의 지침에 의하여 "갑"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갑"은 용자대상자(기한연장 및 재대출 포함)를 선정하여 추천한다

제 3 조 (용자한도및 이율)

용자한도 및 이율은 매년도 건설교통부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4 조 (상환기관)

용자금은 2년만기 일시상환으로 한다. 다만 전세 재계약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2년간 연장할 수 있다.

제 5 조 (용자 등)

- ①"갑"은 제 2조의 규정에 의거 선정된 용자대상자로 하여금 "을" 또는 "을"이 지정하는 지점에서 용자받도록 조치한다.
- ②"을"은 용자시 가옥주 또는 재산세 납부실적이 있는 보증인 1인을 연대보증토록 하거나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를 담보로 받는다.
- ③"갑"이 선정한 용자 대상자에게 용자취급하는 기간은 당해연도 말까지로 하되 익년도로 이월하여 취급할 수 있다.

제 6 조 (용자금 반환의 특약 등)

① "을"은 용자서류 접수시 첨부된 전세계약서 상에 "가옥주가 세입자의 전세자금을 반환할 때에는 전세금 중 용자금을 관할동장에게 반환한다."는 특약사항이 명기되고 가옥주, 세입자 및 관할동장이 연기명으로 계약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갑"은 제 1항의 특약에 따라 가옥주로 부터 용자금을 반환받아야 하며, "갑"은 이를 즉시 "을"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단, 용자받은 세입자가 용자기간 만기도래 전에 관할 행정구역내로 전출을 연대보증인이 동의하는 경우(보증인 교체 포함)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이 경우 "갑"은 용자받은 세입자의 전입지 관할동장이 연기명한 전세계약서를 첨부한 명단을 "을"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의하여 납부한 용자금의 범위는 "을"의 용자원금에 용자금 납부기일까지의 이자 및 연체이자를 포함한다.

제 7 조 (사후관리)

① "갑"과 "을"은 용자금의 부실화 방지를 위하여 용자취급 및 사후관리에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며 상호 협조한다.

② "을"은 매월 동별 연체자 명단과 원리금 연체 현황을 "갑"에게 통보하며, "갑"은 연체자의 주거상태와 원리금 상환계획등을 파악하여 "을"에게 통보한다.

③ "을"은 용자원금 또는 이자납입 연체가 발생한 경우에는 채무자 및 연대보증인(이하 "채무관계자"라 한다)에게 독촉장 발송, 이행독촉등 사후관리업무를 하여야 한다.

④ "을"은 "갑"으로 부터 용자금 현황에 대한 자료제시 요구가 있을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 8 조 (손실보존)

① "갑"은 제1조제2항의 용자제한 범위내의 "을"의 용자원금 이자 및 연체이자에 대하여 채무자와 연대하여 보증채무를 부담한다.

② "을"이 채무관계자에게 용자원금 또는 이자의납입을 촉구한 후에도 계속하

여 6개월 이상 불이행된 때에는 "을"의 직원이 채무관계자를 심방하여 이행 독촉하고, 이러한 사항을 "갑"에게 통지한다.

③ 이행독촉후 1개월이 경과하여도 용자원금 또는 이자의 납입이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 특별계정의 결손으로 간주하여 "갑"은 "을"에게 이를 보전한다.

④ "갑"이 손실보전할 금액은 "갑"실제보전하는 날까지 발생한 용자원금,이자 및 연체이자를 포함한다.

⑤ "을"이 손실을 보전받고자 할 때에는 "갑"에게 제 3항의 금액에 대하여 매 분기 말일까지 결손보전을 청구하여야 하며 "갑"은 "을"의 청구가 있는날부터 청구일이 속한분기의 익월말일까지 그 결손을 보전하여야 한다.

⑥ 제5항의 결손보전 후 "갑"은 "을"과 강제집행 절차 진행여부에 대한 협의를 거쳐 "을"의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고 "을"의 명의로 "갑"의 비용부담과 책임하에 보전금 회수를 위한 강제집행 절차를 집행할 수 있다.

⑦ "을"은 "갑"으로부터 결손보전이 있은후에도 "갑"의 강제집행 절차 진행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최대한 협조한다.

⑧ "갑"은 손실보전 이행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제 9 조 (기 타)

① 본 협약은 주요내용의 변동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자동연장한 것으로 본다.

② 본 협약의 해석에 관한 사항 및 협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갑"과 "을"이 상호협의하여 정한다.

③ 기타 용자와 관련된 제반사항은 "을"의 내규와 금융관행을 준용한다.

본협약 체결을 입증하고 이를 준수하기 위하여 "갑"과 "을"이 협약시 2통을 작성 서명 날인한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000. 2. .

(갑) 안 산 시 장 (인)

(을) 한국주택은행안산지점장 (인)

도시저소득자 전세자금 융자신청서

□ 저소득자 전세자금 대상자 선정기준

적 용 대 상		배 점	최 고 점 수
안산시거주기간	1년 ~ 3년	1점	3점
	3년 ~ 5년	2점	
	5년이상	3점	
가족 수	3인까지 1인추가시 0.5점 가산	2점	5점
가구원 월소득	1인당 50만원까지 20만원 초과시 만원당 0.2점 감점 (최저시 0 점)	3점	3점
세대주 연령	40세 이상	3점	3점
	30세 ~ 40세미만	2점	
	30세미만	1점	
가구원 구조형태	장애자 1급 ~ 3급	5점	5점
	장애자 4급	4점	
	장애자 5급	3점	
	장애자 6급	2점	
	모자가정 보건소에 등록된 사람에 한하여 인정	5점	
노무모 동거여부	노무모(60세이상)동거시 가점 (편무모 포함)	3점	3점
채무보증 이행	가옥주 보증시	3점	3점
동장의견	상환능력을 고려 배점		5점